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이학영·김영진·진선미

김교흥 • 진성준 • 윤호중

한정애 • 이정문 • 박홍배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의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

는 한편, 그 측정·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공개하도록 함으로 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5항 중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 밀조사의 결과는"을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시 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 고, 그 내용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	2
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토양오염의 원</u>
	인이 되는 물질에는 「원자력
	<u> 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u>
	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
	사성폐기물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	제3조(적용 제외) <u><삭 제></u>
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u>상시측정</u> , 토양오염실태조사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4항까지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
<u>의 결과는</u> 공개하여야 한다.	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u>의</u>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 고, 그 내용을-----.